

#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06.16(화)

3. 변경 사유 :

- 종류 S(P)2 수익증권 신설
- 수익증권 표기 변경 : 종류 S(P) 수익증권 → 종류 S(P)1 수익증권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3등급→2등급)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 반영

##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위험등급	3 등급(다소높은위험)	2 등급(높은위험)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19.10.30 기준	2020.04.29 기준
투자실적추이	2019.02.06 기준	2020.05.01 기준
운용전문인력	2019.09.19 기준	2020.06.01 기준

##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수익증권 종류 표기 변경	종류(Class) S(P)	종류(Class) S(P)1
요약정보		
투자위험등급	3 등급(다소높은위험)	2 등급(높은위험)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19.10.30 기준	2020.04.29 기준
투자실적추이	2019.02.06 기준	2020.05.01 기준
운용전문인력	2019.09.19 기준	2020.06.01 기준
제 1 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9.09.19 기준	2020.06.01 기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 판매보수 0.29%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⑥수익증권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제 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일반위험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권에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4.32%으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3등급(다소 높은 위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9.71%으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등급(높은 위험)으

	험)으로 분류됩니다	로 분류됩니다
- 위험등급 변경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2 등급(높은 위험)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가.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 자자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 연금사업자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나.환매 (5)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 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 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 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 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19.05.01 기준 <신설>	2020.05.01 기준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14.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 항 나.과세 (2)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 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 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 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 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 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 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 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 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 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 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 수 하고 있습니다
14.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 항 나.과세 (5)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 세	종류 C(P)2, C(Pe)2, 수익증권 가입자	종류 C(P)2, C(Pe)2, S(P)2 수익증권 가입자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제 14 기(2019.05.01) 기준	제 15 기(2020.05.01) 기준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8.12.31 기준	2019.12.31 기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운용자산 규모	2019.10.25 기준	2020.06.01 기준

#### ▣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수익증권 종류 표기 변경	종류(Class) S(P)	종류(Class) S(P)1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생략> 9.“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0.<생략>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현행과 동일> 9. <삭제> 10.<현행과 동일>
제 3 조 (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6.<생략> 17.<신설>	①~② <현행과 동일>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6.<현행과 동일> 17.Class S(P)2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제 9 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 10 조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

<p>(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16.&lt;생략&gt; 17.&lt;신설&gt;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li> <li>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li> </ol> <p>③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한 때에 법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p> <p>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⑤&lt;생략&gt;</p>	<p>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1.~16.&lt;현행과 동일&gt; 17. Class S(P)2 수익증권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 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객의 성명 및 주소</li> <li>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li> </ol> <p>③&lt;삭제&gt; ④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⑤&lt;현행과 동일&gt;</p>
<p>제 11 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제 12 조 (수익증권의 재교부)</p>	<p>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당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 13 조 (수익증권의 양도)</p>	<p>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lt;생략&gt;</p>	<p>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lt;현행과 동일&gt;</p>
<p>제 14 조 (수익자명부)</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lt;생략&gt;</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lt;현행과 동일&gt;</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p>

	<p>⑤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p> <p>2.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p> <p>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제6항에 따른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⑧ &lt;생략&gt;</p>	<p>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p> <p>2.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p> <p>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lt;삭제&gt;</p> <p>⑧ &lt;현행과 동일&gt;</p>
<p>제 15 조 (자산운용지시 등)</p>	<p>① &lt;생략&gt;</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lt;생략&gt;</p>	<p>① &lt;현행과 동일&gt;</p>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lt;현행과 동일&gt;</p>
<p>제 17 조 (투자대상자산 등)</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②&lt;생략&gt;</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②&lt;현행과 동일&gt;</p>
<p>제 22 조</p>	<p>①~② &lt;생략&gt;</p>	<p>①~② &lt;현행과 동일&gt;</p>

<p>(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⑦ &lt;생략&gt;</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⑦ &lt;현행과 동일&gt;</p>
<p>제 24 조 (수익증권의 판매)</p>	<p>① &lt;생략&gt;</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	<p>① &lt;현행과 동일&gt;</p> <p>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
<p>제 26 조 (환매업무)</p>	<p>①~③ &lt;생략&gt;</p> <p>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⑥~⑦ &lt;생략&gt;</p> <p>⑧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p>	<p>①~③ &lt;현행과 동일&gt;</p> <p>④ &lt;삭제&gt;</p> <p>⑤ &lt;삭제&gt;</p> <p>⑥~⑦ &lt;생략&gt;</p> <p>⑧ &lt;삭제&gt;</p>
<p>제 27 조 (환매가격)</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제 35 조 (상환금 등의 지급)</p>	<p>①~② &lt;생략&gt;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② &lt;현행과 동일&gt;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38 조 (반대수익자의 매수 청구권)</p>	<p>①~③ &lt;생략&gt;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p>	<p>①~③ &lt; 현행과 동일 &gt; ④ &lt;삭제&gt;</p>
<p>제 39 조 (보수)</p>	<p>①~② &lt;생략&gt;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6.&lt;생략&gt; 17.&lt;신설&gt;</p>	<p>①~② &lt;현행과 동일&gt;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6.&lt;현행과 동일&gt; 17. Class S(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1000분의6.5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1000분의2.9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1000분의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1000분의0.15</p>
<p>제 44 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③ &lt;생략&gt; ④~⑥ &lt;신설&gt;</p>	<p>①~③ &lt;현행과 동일&gt;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변경시행일 전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p>

		<p>음 각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대상금액 :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p> <p>2. 대상기간 :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p> <p>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제4항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법 제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 45 조 (투자신탁의 해지)</p>	<p>①~③ &lt;생략&gt;</p> <p>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①~③ &lt;현행과 동일&gt;</p> <p>③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 49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 47 조 (투자신탁의 합병)</p>	<p>①~③ &lt;생략&gt;</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p>	<p>①~③ &lt;현행과 동일&gt;</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p>

	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 48 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소각 2.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① <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9 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⑧ <생략> 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이하 이 항에서“보고서”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⑧ <현행과 동일> 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이하 이 항에서“보고서”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